4.1.2 제규정관리규정

제정 2000. 04. 21. 개정 2006. 10. 19. 개정 2010. 02. 12. 개정 2010. 10. 21. 개정 2017. 09. 14. 개정 2018. 07. 26. 개정 2018. 12. 04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규정의 제정, 개폐 와 관리·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규정의 관리·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모든 규정은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정, 개폐 및 관리·우용하여야 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"제규정"이라 함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본 대학에서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진 체계적인 규범적 문서로서 규정과 시행세칙 및 내규를 말한다.
 - 1. "규정"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, 학칙에 준거하여 본 대학의 직제에 관한 사항 및 부속,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과 제반업무의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기준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 - 2. "시행세칙"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, 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 - 3. "내규"라 함은 학칙 및 규정 등의 하위준칙으로서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부서의 업무기준이나 수행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- 제4조(규정화) 각 부서는 소관업무 수행방침이나 절차, 기준 등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규정화하여야 한다.
- 제5조(순위) 제규정의 효력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규정
 - 2. 시행세칙
 - 3. 내규

제2장 제규정의 체계

제6조(편성) 본 대학의 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1. 총칙: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, 기타 총괄적인 사항
- 2. 본칙: 기본사항 또는 지침, 절차 등
- 3. 부칙: 시행일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규정과의 관계 및 개폐절차, 효력기간(한시규정의 경우)

제7조(형식) ① 본 대학의 제규정은 제6조의 편성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규정의 항목은 장, 절, 조, 항, 목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, 장, 절,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. 다만,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여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.
- 2.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, 절은 장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, 조는 장,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- 3.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 - 가. 항의 표시 : ①, ②, ③, ④
 - 나. 호의 표시 : 1. 2. 3. 4.
 - 다. 목의 표시 : 가. 나. 다. 라 ...
 - 라. 목 이하의 표시 : (1). (2). ...
- 4. 부칙의 조문은 본문조항에 따라 연장표시하지 아니하고 ①, ②, ③, ④ ...로 표시하되, 규정조항이 1개일 때에는 번호를 생략한다. 다만, 5개항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조로서 표시한다.
- 5.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, 방법, 도해 등은 별표 또는 별지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, 첨가되는 별표 및 별지의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.
- ② 조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,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, 숫자는 아라비 아 숫자로 표시한다.

제3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
- 제8조(제정권자) 본 대학의 제규정과 개폐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. 다만, 본 대학 교직원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9조(주관부서) 본 대학의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기획연구처에서 관장한다. 〈개정 2018.07.26.〉
- 제9조의2(시기) ①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년 6회, 1월을 포함하여 격월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제정 및 개폐 사항에 한해서는 정해진 시기 외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② 규정심의위원회는 시행 월별 마지막 주중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. <조신설 2018.12.04>
- 제10조(입안) ① 제규정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관련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입안하되 규정 입안서 〈제1호 서식〉에 의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② 제규정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소관부서는 그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- ③ 제규정의 입안 또는 제정 및 개폐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연구처장은 업무소관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안에 따라 직접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.09.14〉 제11조(제정 및 개폐절차) ① 제규정의 제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 - 1. 주관부서는 제10조에 의해 제출된 규정안의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되,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2. 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결재 또는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.
 - ② 제규정의 개폐절차도 제1항에 따른다.
 - ③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,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입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④ 내규 및 시행세칙은 경우에 따라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〈신설 2018.12.04〉
 - ⑤ 규정의 개폐 등에 따라서 후속으로 발생하는 다른 규정의 형식적인 개정사항 및 서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개정절차를 생략하고, 당연히 명칭, 용어 등을 통일하여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. <신설 2018.12.04>
- 제12조(규정안의 작성) 규정안의 작성은 제6조및 제7조의 형식에 따르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규정안 제정의 사유(개정할 때에는 개정의 사유)
 - 2. 규정안의 요점(개정할 때에는 개정의 요점)
 - 3. 제7조형식에 의한 규정안 〈개정 2010.10.21〉4.규정 개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. 〈신설 2010.10.21〉
 - ① 삭제구문은 빨간글씨로 표기한후, 취소선 처리한다.
 - ② 추가구문은 파란글씨로 표기한다.
- 제13조(소관규정 검토 및 개정요청) 각 부서의 장은 소관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,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신학년도 시작 3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급히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장 제규정의 효력

- 제14조(공포방법) 본 대학 제규정의 공포는 기획연구처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고 및 배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〈개정 2018.07.26.〉
- 제15조(효력) ① 제규정의 효력은 부칙으로 정하는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.
 - ② 법령 또는 정관 및 학칙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 - ③ 규정, 시행세칙 및 내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때에는 상위 규정이 우선 한다.
 - ④ 현행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유효기간이 정해진 규정이라도 그 규정에 의한 업무가 그 기간의 만료후까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갖는다.
- 제16조(해석) ① 제 규정의 해석은 당해 규정의 제정취지에 따라야 하며, 지나친 확대, 축소 및 유추 해석은 금한다.
 - 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획연구처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 〈개정 2018.07.26., 2018.12.04〉

제5장 제규정의 관리

제17조(관리) 주관부서는 심의확정된 제규정을 규정관리대장〈제2호 서식〉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 및 관련부 서에 통보한다.

제18조(규정집 및 추록의 발간) ① 주관부서는 제규정을 수록한 규정집을 발간하여 배부한다.

- ②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는 원칙적으로 년 1회 추록을 발간, 배포하여 규정 집을 가재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기를 정하여 발간, 배포할 수 있다.
- ③ 배포된 규정집은 사용부서에서 보관하고 제정 또는 개폐된 제규정은 가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〈제1호 서식〉 〈개정 2018.12.04〉

○ ○ 규정 입안서

- 1. 개정 사유
- 2. 주요 내용

첨부 : 1. 신구조문 대비표(개정(안)의 경우 작성)

2. 제·개정(안) 전문

년 월 일

(부서명) 인

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

〈제2호 서식〉 규정관리대장

| 규정번호 | 규 | 정 | 명 | 제(개정)구분 | 일자 | 비고 |
|------|---|---|---|---------|----|----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